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59 | 2026.11.23. (2026.11.16. ~ 2026.11.22.)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정 요건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내대리인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운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지식위원회>는 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가진단모델, 국내 기술유출 관련 판례 분석, 기술보호 제도 및 지원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원스톱 대응을 위한 기술보호 통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기준, 신고,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해 규정하기 위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기계설비 유지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등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행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호가를 과다하게 제출·정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과다호가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다호가로 거래소시장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호가 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성과보수 환수 제도를 도입하여 재무제표 정정이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실이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할 수 있게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핵추진잠수함사업과 관련한 외교 업무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역할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간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협력 및 핵연료 공급과 관련한 협력체계와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핵추진잠수함사업 외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건의원 등 11인)」,**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운송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운송수단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1인)**」,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로서 모회사의 통신망과 사업 기반을 활용하여 알뜰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기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창업기획자 또는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이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대해 최초 또는 후속투자를 하는 경우 이를 투자의무 인정 대상에 포함하여 창업기업의 초기 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22인)**」,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 등 건축물 지붕 또는 유휴 용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AI 및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무단으로 변형·합성한 표현물을 제작·전송·광고하는 등의 행위를 엄격히 규율하고, 데이터 부정취득·사용 및 무단 공개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고, 기술 탈취·유출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 및 과징금 부과 근거를 도입하는 등의 「**영업비밀보호법안(장철민의원 등 10인)**」,

공사와 관련된 도급·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발주자와 공사업자간 형평성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최초 임대기간을 20년 이내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기간을 별도로 두며, 재생에너지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공장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 등을 하는 경우 지붕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법사위>, <재경위>, <과방위>에서는 법무부장관 후보자, 국세청장 후보자, KBS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며, **<정무위>, <국방위>, <복지위>, <기후노동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전자상거래법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 발표(공정거래위원회) ····· 7
- 「원스톱 대응을 위한 기술보호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국가지식재산위원회) ·····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0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 10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산업통상부) ····· 11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 11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후에너지환경부) ·····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3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3
-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4
-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 14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 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4인) ····· 16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 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 17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 17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 18
- 핵추진잠수함사업 외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건의원 등 11인) ····· 18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1인) ·····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 19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 19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 20
-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9인) ····· 21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 ····· 21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8인) ····· 22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 22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22인) ·····2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23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24
-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5인) ·····24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25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25
- 영업비밀보호법안(장철민의원 등 10인) ·····26
-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7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27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2인) ·····28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28
-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29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3인) ·····29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29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30
-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30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31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1인) ·····3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32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폐지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32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4인) ·····33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5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10. 28. - 2026. 11. 10.)
- **[공정거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개정안에서 이행감독기구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국방획득/방위산업]** 검찰청 폐지에도 불구하고 군형사절차는 종전의 수사·재판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군인·군무원 및 방산기업 임직원은 「군사법원법」과 「형사소송법」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방송통신(TMT)]** AI 산출물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규제 강화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전부개정안 발의
- **[금융]** 디지털금융 ISSUES (2026. 10. 30. – 2026. 11. 12.)
- **[에너지·인프라]**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 발표** -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운영 기준 구체화 - 한국어 상담 등 소비자 응대 기준 제시	2026-11-18

공정거래위원회는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자상거래법 국내대리인 지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음

이번 가이드라인은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정 요건과 방법을 구체화하는 한편, 국내대리인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운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밝힘

1.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 및 판단 기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에서 지정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지정 대상 기준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함

지정 대상 기준

❶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경우
❷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 평균 사이버몰 접속 국내 소비자 수(MAU)가 100만 명 이상**인 경우
❸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여 **현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공정위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물건 제출 명령** 등을 받은 경우

이번 가이드라인은 ❶매출액 산정 시 전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과 자회사 매출액도 포함된다는 점, ❷사이버몰 접속 국내 소비자 수의 산정이 실제 활동을 수행한 고유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❸공정위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물건 제출 명령을 받은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현저한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의 판단기준 등을 제시하였음

2. 국내대리인 지정 방법

해외사업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서면 지정하여야 함. 다만, 해외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지정하여야 함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 법인의 설립·지배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하나의 해외사업자가 복수의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거나 하나의 국내대리인이 복수의 해외사업자를 대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음

3. 국내대리인의 역할 및 운영

국내대리인은 해외사업자를 대신하여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공정위 자료제출 명령 등에 대한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실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보 공개와 유효한 연락체계 구축 의무를 짊

이번 가이드라인은 국내대리인이 형식적인 연락 창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비자 불만·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화 및 전자우편 응대 방식을 구체화하였음

국내대리인 소비자 응대 방식 관련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① 다른 절차를 우선 밟거나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전화와 전자우편을 모두 이용하여 국내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국내 영업시간(9~18시)에 직원이 직접 전화에 응대하고, 한국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③ 전자우편 문의에 대해서도 한국어로 처리상황 및 결과를 회신하고, 소비자 질의에 성실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할 것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원스톱 대응을 위한 기술보호 통합 가이드라인」 발표** - 기업 스스로 기술보호 수준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모델 수록 - 국내 기술유출 관련 판례 분석하여 시사점 제시 - 기술보호 관련 제도와 지원 정보 통합적 제공	2026-11-19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가진단모델, 국내 기술유출 관련 판례 분석, 기술보호 제도 및 지원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원스톱 대응을 위한 기술보호 통합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힘

그간 기업들은 기술보호 관련 제도와 지원정보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음. 특히 중소기업·스타트업은 기술보호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자사의 기술보호 수준을 점검하거나 기술유출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방법을 신속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이 기술보호 및 기술유출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기업 스스로 기술보호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자가진단모델을 수록했음. 기업은 자사의 기술보호 관리 현황과 취약 요인을 확인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파악할 수 있음

둘째, 국내 기술유출 관련 판례를 분석해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했음. 실제 분쟁 사례를 통해 기술유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과 기술보호 조치의 중요성을 살펴보고, 기업이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예방 및 대응 방향을 안내함

셋째, 기술보호 관련 제도와 지원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함.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술유출 대응을 위한 정책 및 지원제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음

< 가이드라인 목차 및 주요 내용 >

목 차	주요 내용
1. 가이드 활용법	기술유출·탈취 개념 정리, 최근 5년 유출경로 분석, 원스톱 활용법
2. 법체계 한눈에 보기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특허법, 하도급법 등 관련 9개 법률 비교
3. 기술유출 예방하기	비밀유지계약,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기술자료 임치, 보안 체크리스트
4. 내 상황 자가진단	보호대상 기술 식별 매트릭스, 침해주체 및 유출 경로 분석표
5. 단계별 대응 방안	징후 발견, 증거 보존, 수사의뢰 및 행정조사, 민형사 구제절차 지도
6. 사례별 대응전략	퇴직자 유출, 협력업체 기술탈취, 해외유출 등 대표 판례 및 판정 사례

지재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중소기업·스타트업 관련 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기업에 배포하여 산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가이드라인 전문(PDF)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영업비밀보호센터, 기술보호울타리 등의 공식 누리집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음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11-20 시행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된 주주는 보유주식 수나 주식 보유목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다른 주주의 보유주식 처분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652호, 2026.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특수관계인과 합산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게 된 주주는 보유주식 수 등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회사의 자본금 감소 등으로 인해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는 기간통신사업 최대주주 인가신청서에 회사의 주주 현황 및 최대주주가 된 이후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11-20 시행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부적격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개정(법률 제21674호, 2026. 5. 19. 공포, 11. 20. 시행)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시작일 7일 전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점검계획을 통지하도록 하며, 점검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 제출의 사유, 범위, 기한과 방법을 명시한 문서로 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산업통상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6-11-23 시행

제조업을 경영하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에 연구기관을 신설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는 등의 경우를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의 범위에 추가하여 '국내복귀'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첨단산업 및 국내 공급망 안정 관련 분야 생산기술의 연구개발, 시험제품의 실증생산 또는 표준화를 통해 국내외 생산거점의 기술·생산·품질을 관리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를 '국내복귀'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808호, 2026. 11. 10. 공포, 11. 23. 시행)됨에 따라,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완료신고 및 국내복귀계획 이행결과 신고 시 제출서류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고,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서 등에 '국내사업장의 첨단산업 등 해당 여부'란을 추가하는 등 대통령령의 개정에 맞춰 관련 신청·신고 시의 제출서류 및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신청 시 제출서류에 신청기업의 과거 3년간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고,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완료신고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신고인이 제출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11-27 시행 예정

지역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21706호, 2026. 5. 26. 공포, 11. 27. 시행)됨에 따라,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업무 등 시·도지사의 업무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6-11-17 시행

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의 일종인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종전에는 해수의 표층 및 하천수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로 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온의 적정성 및 수량(水量)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도 포함하도록 하여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1.17. ~2026.12.28.

소프트웨어사업의 공정이 설계 완료 등 일정한 수준에 이른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865호, 2026. 8. 11. 공포, 2027. 2. 12. 시행)됨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의 의무개최 대상사업 및 개최 시점을 구체화하고, 의무개최에 필요한 과업내용 변경 여부와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사항의 사전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심의 간소화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출석·의견진술 절차 마련 (안 제46조제6항)

- 과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출석 및 의견진술 절차를 마련하고,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출석 및 의견청취를 의무화하도록 정함

② 과업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정비 (안 제47조)

- 법률(제50조제4항) 개정으로 기존 과업심의위원회에 더하여 의무 개최 단계가 추가됨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및 심의의결 절차를 정비함

③ 과업심의위원회 의무개최 대상사업 및 개최 시점 구체화 (안 제47조의2)

- 법률(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과업내용의 변경가능성이 높은 소프트웨어사업' 등 의무개최 대상사업 및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진도' 등 의무개최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의무개최에 필요한 사전 확인 등 절차를 마련함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전화: 044-202-6337, 팩스: 044-202-60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2026.11.20. ~2026.12.30.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759호, 2026. 6. 9. 공포, 2027. 3. 10. 시행 예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기준, 신고,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이 법률의 목적과 위임 범위에 따라 해석·적용되도록 하고자 함

※ 문의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전화: 044-202-6594)

국토교통부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1.19. ~2026.11.30.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등 중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계설비법」이 개정(법률 제21813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 기계설비 유지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등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전화: 044-201-4585, 팩스: 044-201-5547))

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11.20. ~2026.12.31.

주택조합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조합원모집신고·조합설립인가 시 토지매매계약서 확보, 공사비 검증 및 현장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택법」이 개정·공포(법률 제21902호, 2026.9.8.)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전화: 044-201-3332, 팩스: 044-201-5529))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11.18. ~2026.11.28.

위해 위생용품의 신속한 회수 도모를 위해 현행 회수 계획 보고 기간을 단축하고 회수 종료 예정일을 설정하며, 새로이 영업을 하려는 영업자의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영업자가 검사결과 기록·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축·운영하는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 회수 계획 보고기간 단축 및 회수 종료 예정일 설정 (안 제22조의2)

- 신속한 회수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위해한 위생용품의 회수계획 보고 기간을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회수 등급에 따라 회수 종료 예정일을 설정하고자 함

② 영업 신고 등 첨부서류 간소화 (안 제3조, 제9조)

- 영업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교육 이수증을 첨부토록 하던 것을 신규 창업기업에 대한 규제 지원의 일환으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에서 제외하도록 함
- 현행 폐업 신고 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는 영업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분실 사유를 작성하고 제출 면제토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③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활용 근거 명확화 (안 별표 2)

-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영업자가 검사 결과의 기록·보관을 위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전화: 043-719-1741, 팩스: 043-719-1730)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24인)	2026-11-17 발의

현행법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금융서비스의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를 두고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자가 정식 인·허가를 취득한 경우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에도 동일·유사 서비스의 샌드박스 진입이 관행적으로 계속되어 초기 스타트업이 경쟁압력에 노출되는 등 혁신금융사업자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된 바 있음. 또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변경 결정 등 모든 안건에 대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모두 거쳐야 하는 등 관련 심사 및 지정 제도가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AI 등 발전하는 금융 관련 기술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심사가 제한되고 있으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거나 지정일로부터 장기간이 도과하도록 서비스가 개시되지 아니하는 사례가 누적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① 혁신성 보호가 필요한 유망한 서비스의 초기 경쟁압력을 경감하기 위해 샌드박스 단계에서도 배타적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②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과 관련된 권한 및 절차 등을 정비하여 심사 자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운용하고, 혁신성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전문성 있는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함 (안 제4조제5항, 제13조 제6항 신설 등)

③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실제 서비스 출시에 대한 보고 의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서비스 운영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18조제8항 신설)

정무위원회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2026-11-17 발의

대한민국 정부는 테러, 대량살상무기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국제연합(UN)의 금융제재 결의 및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의 권고사항 이행 등을 위해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현행 법률은 국제사회 요구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율함에 따라 완결성이 낮고 초국가범죄 등 최근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反인권적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대상자의 범위에 종전의 테러·대량살상무기확산 관련자 외에 초국가범죄 관련자를 추가하고, 이 법에 따른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거래등 금지 의무를 금융회사 외에 변호사·회계사·세무사·공인중개사 등 특정비금융전문가등에도 확대 적용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금융회사등의 이 법에 따른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감독·검사권을 부여**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융제재 이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2026-11-19 발의

최근 고속 알고리즘 거래(High Frequency Trading)가 확대되면서 체결가능성이 낮은 대량의 호가가 단시간에 제출되고 정정·취소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

거래소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에서 과다한 호가건수로 거래소파생상품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호가의 접수를 제한하고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담금 수입을 징수하는 거래소가 부담금의 부과 여부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으므로 부과 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고, 과다호가에 대한 제재를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호가를 과다하게 제출·정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 거래소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과다호가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다호가로 거래소시장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호가 접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78조제8항 및 제397조의2 신설 등)

정무위원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2인)	2026-11-19 발의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일정 임직원의 보수 중 일정비율 이상을 성과보수로 정하여 일정기간 이상 이연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보수가 장기성과와 연계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지급된 성과보수의 환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성과는 경영진에게 귀속되는 반면 위험과 손실은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가 부담하는 보상 구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음. 특히 성과보수를 지급한 뒤 그 기초가 된 성과가 부풀려졌거나 중대한 손실이 뒤늦게 드러나더라도 이를 되돌릴 수단이 없어, 성과보수가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는 장치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해외 주요국과 같이 성과보수 환수(Clawback) 제도를 도입하여 사후에 드러난 손실과 부실에 대해서도 보수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과보수 환수 제도를 도입하여 재무제표 정정이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실이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보수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과보수가 장기성과 및 그에 따른 책임과 연계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제6항)**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2026-11-19 발의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60일의 지급기한으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의 자금 융통성이 원활하지 않아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및 지연이자 부과 기준 기한 등을 현행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여 하도급업체의 자금 순환을 원활히 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6조제3항, 제11조제4항, 제13조, 제15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

외교통일위원회	핵추진잠수함사업 외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건의원 등 11인)	2026-11-16 발의

핵추진잠수함사업은 잠수함의 설계·건조 및 운영뿐만 아니라 핵연료와 원자력 안전,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원자로 기술 및 국제협력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국가적 사업임. 이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는 관련 국제규범과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정부안은 사업의 획득·운영 및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교·국제협력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및 관계 기관 간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핵추진잠수함사업과 관련한 외교 업무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역할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간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협력 및 핵연료 공급과 관련한 협력체계와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1인)	2026-11-17 발의

현행법은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거나 그 거래를 중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산물자의 수출허가 이후 실제 물자가 국외로 이전되는 운송 과정에서의 물리적 보안 대책이나 운송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는 미비하여 보안상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방산물자를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사전에 운송계획을 수립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관리·통제할 수 있는 안전한 운송수단을 이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수출 과정에서의 보안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57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2026-11-16 발의

현행법은 자경농지에 대해서는 구역 제한 없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고, 영농자녀가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전액 감면하고 있음

반면 산지의 경우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아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더라도 오직 '보전산지'에 한해서만 자경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10~50% 차등 감면하며, 증여세 감면 역시 보전산지 내 신규 조림지로 극히 제한되어 과세 불평등이 심각하고, 이로 인해 임업인은 준보전산지에서 실제 산림 경영이나 작물재배를 하더라도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겪고 있음

이에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 대상을 기존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까지 확대하는 한편, 농업과 유사한 작물재배업·임업용 종묘생산업·임산물 채취업은 8년 자경 시 100% 감면하도록 조정을 하고, 목재 생산 등 일반 임업의 경영 기간별 양도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여 농업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69조의4제1항·제2항 및 제71조제1항 등)**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2026-11-20 발의

현행법은 담배에 대하여 종류별로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안전 분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방 인력의 운용과 시설·장비의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다만, 이를 위하여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만을 인상할 경우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와 부담금의 구성을 함께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하되, 이와 연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인하**함으로써 담배에 대한 전체 제세부담의 증가를 억제하면서 소방·안전 분야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안 별표)**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의원 등 10인)	2026-11-16 발의

정부는 2010년대 초반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이동통신 재판매(이하 “알뜰폰”) 제도를 도입하였고, 알뜰폰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주요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음

알뜰폰 제도의 양적 성장과 함께 이용자의 선택권도 확대되었으나, 시장에서는 기존 이동통신 3사(SKT, KT, LGU+)의 계열회사와 금융 부수업무로 알뜰폰을 운영하는 시중은행 등 대기업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자본력과 유통망, 기존 가입자 기반 등에서 우위에 있는 사업자로 시장이 집중될 경우 중소·영세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 기반이 약화되고, 장기적으로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자와 서비스의 다양성 역시 축소될 우려가 있음

특히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는 모회사인 이동통신사의 통신망과 사업 기반을 활용할 수 있고, 대기업군에 속하는 알뜰폰 사업자 또한 자본력과 기존 고객 기반 등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사업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음. 이러한 시장구조가 고착될 경우 알뜰폰 사업자 간 서비스 경쟁보다는 자본력과 사업 규모에 따른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어, 알뜰폰 제도가 당초 지향한 다양한 사업자의 시장 참여와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 확대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로서 모회사의 통신망과 사업 기반을 활용하여 알뜰폰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기간통신사업 등록이 되어 있는 이동통신 3사의 계열회사나 대기업군에 해당하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 등록 취소 또는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4항·제5항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9인)	2026-11-17 발의

현행법은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 방사성물질등의 운반·포장 중 사고, 원자력이용시설의 고장 등 및 방사선장해, 방사선발생장치 또는 방사성물질등의 도난·분실 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 또는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보고·신고 의무는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만 부여되어 있어, 사건을 은폐한 종업원을 보고의무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실제로 2012년 고리1호기 소외전원상실 사건에서 발전소 운영진이 사고 사실을 약 1개월간 은폐하였으나, 법원은 보고의무가 법 문언상 원자력관계사업자에게만 부여되어 있다는 이유로 종업원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원자력관계사업자 역시 종업원의 은폐로 사고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었음. 2024년 월성4호기 저전압 발생 및 안전설비 미작동 사건에서도 같은 취지로 종업원의 보고의무 위반 혐의가 불기소 처분되는 등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 원자력관계사업자로부터 방사성물질등의 운반을 위탁받은 자 및 각각의 종업원이 보고·신고 대상 사건의 발생 사실을 숨기거나 관련 자료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하는 행위 등의 은폐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은폐 행위를 하거나 그 은폐 행위를 교사 또는 공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은폐 행위를 허가 취소, 업무정지 및 사용금지 등 행정처분 사유에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과실로 인하여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고 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방사선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핵원료물질사용자 및 신고사용자에 대해서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처벌 체계를 고의와 과실에 따라 이원화하고, 핵원료물질사용자 및 신고사용자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보고·신고 대상 사건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스스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에는 사용금지명령 및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자진 보고·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97조의2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	2026-11-18 발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 첨단 IT 기기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시도가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국가 주관 시험의 공정성 훼손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타인의 전파 이용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대통령 경호, 군사·대테러 활동, 공항·원자력시설 방호 등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드론 및 폭발물 등의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전파차단장치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등 국가 주관 시험 현장에서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파차단장치를 활용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전파차단장치의 예외적 사용 허용 사유에 「고등교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주관 시험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경찰의 위험 방지 및 범죄 예방·제지 활동 근거를 연계 정비**함으로써 국가 주관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제3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8인)	2026-11-20 발의

현행법은 방송통신의 공익성·공공성을 보장하고 방송통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콘텐츠의 제작·유통 지원, 방송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크리에이터미디어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나,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한데다 표준계약서의 보급도 미흡하여 구두계약, 불리한 수익배분 등 불공정 계약으로 인한 권리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크리에이터가 제작한 콘텐츠의 대부분이 대형 플랫폼을 통하여 유통되어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크리에이터 보호를 위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공유형방송통신콘텐츠제작자 등이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하도록 하는 한편, 계약서 명시·교부 의무, 플랫폼 사업자의 계약조건 고지 의무, 계약 관련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크리에이터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0인)	2026-11-17 발의

현행법은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화업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영화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하기 위해서는 자막·화면해설 등 편의서비스 제공과 관련 기기·설비의 설치·운영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나, 이를 위한 비용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의4 제2항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22인)

2026-11-16 발의

현행법은 창업기획자로 하여금 등록 후 5년이 지난 날까지 전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기창업기업(사업개시 후 3년 이내인 창업기업)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 검증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분야에서는 초기창업기업 당시 창업기획자의 투자를 받았더라도 후속 투자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창업기업의 생존을 위해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의 최초 또는 후속투자로도 투자의무를 달성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창업기획자 또는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이 사업개시 후 5년 이내의 창업기업에 대해 최초 또는 후속투자를 하는 경우 이를 투자의무 인정 대상에 포함하여 창업기업의 초기 자본 공급을 활성화하고, 창업기획자의 고유계정 및 창업기획자가 운용하는 개인투자조합·벤처투자조합의 투자의무 인정 기준을 통일**해 시장의 혼란을 줄이려는 것임 **(안 제13조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2026-11-16 발의

글로벌 탄소중립 및 RE100(Renewable Energy 100) 실현 요구에 대응하여 정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이 집중되는 산단단지 내에 2030년까지 6GW 태양광 보급목표를 제시하고, 공공주도의 산단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 산업단지 태양광 보급은 약 2.1GW에 불과하여 민간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 없이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산단 태양광 보급사업만으로는 2030년까지 산단 태양광 보급 목표치 달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임

한편, 산업단지 조성 초기 또는 공장 신축 시에 입주기업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공장 지붕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생에너지 잠재량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나, 현행법상 산업용지 등에 대한 임대규제가 있어 태양광 보급에 큰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 등 건축물 지붕 또는 유휴 용지를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임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산업단지 내 태양광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3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8조의3제1항제4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2026-11-17 발의

현행법은 공장 및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이 법정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인허가 승인권자가 공장등록 등 기존 인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을 폐업하는 기업이 이를 직접 신고하는 제도는 구비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해 공장 등이 실제 폐업하더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해당 폐업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하여 기존 공장등록 등 인허가의 취소 시까지 많게는 수년에서 수개월의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며, 산업집적을 위한 지원시책 수립에 반드시 필요한 공장 및 입주기업 데이터의 정합성 확보도 곤란한 실정임

이에 **법률에 공장 등의 폐업신고 근거를 명확히 신설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서에 대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폐업신고를 통합·연계하여 처리할 수 있는 하위규범 위임근거를 마련**하여 공장 등 기업의 폐업에 필요한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제조업 등 산업의 정밀한 데이터 수집을 바탕으로 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5인)**	2026-11-17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과 제조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제조 현장은 단순 자동화를 넘어 인공지능이 스스로 공정을 최적화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있음. 반면 현행 지원체계는 스마트공장의 보급·구축 단계에 머물러 있음

인공지능을 활용하려면 먼저 현장 데이터를 모으고, 이를 학습에 쓸 수 있게 다듬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데이터 수집 설비와 정제를 위한 인프라와 비용을 지원할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음. 이 때문에 수집 설비와 정제 역량을 갖추지 못한 중소기업은 인공지능 활용의 출발점에도 서지 못하고, 데이터를 갖춘 기업과의 격차가 벌어질 우려가 있음

개별 중소기업이 학습에 필요한 규모와 품질의 데이터를 혼자 확보하기는 어려움. 그런데 이 법에는 여러 기업이 데이터를 함께 구축하고 활용하는 협력체계를 지원하고 공동 활용에 필요한 표준협약서를 보급할 근거가 없음. 제조 현장에는 공정을 잘 아는 숙련인력이 있지만 데이터와 인공지능 역량이 부족함. 반대로 데이터와 인공지능 역량을 갖춘 청년 인력은 현장 경험이 부족함. 두 인력이 현장에서 함께 일하도록 지원할 근거가 없음

이에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스마트공장 보급에서 제조 인공지능 전환으로 넓히고, 제조데이터의 수집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과 현장 인력 배치를 지원**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2026-11-17 발의

현행법은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 침해행위로 인한 상표 가치 훼손 및 무단 도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제도를 두고 있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적인 침해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고 실제로는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보상하는 전보배상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전보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원이 필요한 경우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등의 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10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	2026-11-17 발의

최근 인공지능 전환(AX)과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시장경쟁의 대상·방식에 대변혁이 야기되고 있음. AI를 이용해 사람의 얼굴·목소리까지 쉽게 복제·합성할 수 있게 되는 등 기존에 예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가 계속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디지털 환경에서 이뤄짐에 따라 단기간에 피해가 대량 확산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식재산처가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익명·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으로 인하여 현행 제도만으로는 조사가 실효적인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AI 시대에 데이터 자산의 가치가 점차 높아짐에 따라 안전한 데이터 제공과 거래를 보장하기 위해 데이터 부정취득·사용 등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제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아울러, AI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특허와 같은 법적권리로 완성되기 전에 시장에서 상품·서비스로 구현되는 경우가 늘어남에 따라, 특허·영업비밀 중심의 기존 지식재산 보호 체계에 대한 보완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음

이에 따라, **AI 및 딥페이크 기술 등을 활용하여 유명인의 초상·음성 등을 무단으로 변형·합성한 표현물을 제작·전송·광고하는 등의 행위를 엄격히 규율하고, 데이터 부정취득·사용 및 무단 공개행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AI 시대 핵심 자산인 데이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며, 나아가 절취·기망 등을 통한 아이디어 부정취득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규율대상에 포섭하여 아이디어 거래·제공관계의 신뢰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부분을 별도 법률로 분리·제정하고자 함에 따라 동 법률의 제명을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변경**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영업비밀보호법안(장철민의원 등 10인)	2026-11-17 발의

공개된 기술은 특허를 통해 독점 배타권을 확보하고, 감춰야 할 기술은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술보호의 일반원칙임. 최근 국가 경제안보 차원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은 2016년 연방 차원에서 영업비밀보호법(DTSA)을 제정하였고, 독일은 2019년 부정경쟁방지법으로부터 '영업비밀보호법'(GeschGehG)을 분리·제정하는 등 주요국은 이미 영업비밀 보호를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와 경제안보 정책의 주요 축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영업비밀 보호제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부수적 보호대상으로만 규율되어 있어 국민·기업의 인식이 저조하고, 전문적인 기술보호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영업비밀 침해 시민·형사 구제가 가능하나, 최근 5년간(2020~2024년) 영업비밀 침해 1심 평균 처리기간은 민사 702.8일, 형사 710.5일이 소요되는 등 민·형사 구제만으로는 기술 탈취·유출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제정하고, 기술 탈취·유출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의 행정조사 및 과징금 부과 근거를 도입하며, 국가 기술안보 강화를 위해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역외적용 근거 도입** 등을 하고자 함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026-11-18 발의

현행법은 공급망 안정화 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비밀준수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급망 관련 정보는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와 직결되는 민감한 정보임에도, 현행법은 비밀준수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이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공급망 정보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51조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의원 등 10인)**	2026-11-19 발의

재생의료기관은 임상연구·치료에 필요한 인체세포등을 세포처리시설로부터 공급받아 활용할 수 있음. 다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등은 제대혈은행 등 타 기관에서 보관하는 세포도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세포처리시설이 인체세포등을 직접 채취한 경우뿐만 아니라 타 기관으로부터 인체세포등을 제공받은 경우도 검사·처리하여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도록 법 근거를 마련하여 타법과의 정합성을 갖추고 인체세포등의 수급 경로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재생의료기관 지정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정 이후 임상연구 및 치료에 참여하는 기관은 저조한 반면,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홍보하며 거짓·과대광고를 게재하는 경우는 다수 확인되고 있음. 이는 안전관리체계 하에서 임상연구·치료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재생의료기관 지정제도의 취지를 저하시키므로, 실제 첨단재생의료 연구·치료를 실시하는 기관 중심의 지정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재생의료기관 지정 후 연구·치료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3년 주기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재지정 받도록 하는 갱신제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오용을 방지하고 재생의료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현행 법령상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는 재생의료기관과 세포처리시설 인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수료해야 함. 그간 첨단재생의료 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였음. 다만, 치료제도 도입으로 의료기관 등의 수익 창출이 가능해졌으며, 유사 사례인 「약사법」상 의약품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도 교육대상자에게 비용을 받고 있음을 고려하여, **첨단재생의료 법정의무교육 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혜자 부담 원칙 및 타법과의 형평성에 부합함 **(안 제10조, 제15조 및 제18조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2인)	2026-11-16 발의

「폐기물관리법」 제27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거나 각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제28조는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를 규정하고 있음

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더라도 그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그런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에게 행정처분이 확정될 경우, 그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이에 **행정처분이 확정된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함 **(안 제28조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2026-11-16 발의

현행법은 전기공사의 도급·하도급 관리를 위해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일부만을 하도급 할 수 있게 하고, 도급대장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저가 낙찰제를 악용해 대형 업체가 주변 중소업체에 입찰가를 지정하여 입찰에 참여시키고, 낙찰된 업체의 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하는 대리입찰을 통한 불법 하도급 등 관행이 있음. 한편 발주자는 공사업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서를 요구하나, 발주자는 공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아 발주자와 수급인인 공사업자간의 분쟁 발생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공사와 관련된 도급·하도급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발주자와 공사업자간 형평성 확보 및 분쟁 해결을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안 제12조의2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지역고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2026-11-16 발의

우리나라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고용 증진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여 왔으나, 중앙정부에 의존한 설계로 인해 각 지역의 고유한 경제·산업적 특성을 온전히 반영하는 데에는 뚜렷한 한계를 노출하였음

특히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을 아우르는 거버넌스의 부재, 협력 체계의 미흡, 그리고 단기적이고 불안정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구조는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아울러 인프라와 정책 수단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의 경우, 지자체의 자체적인 구제 노력만으로는 심화되는 고용 위기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기존 중앙 의존적 일자리 정책의 틀을 깨고 명실상부한 '지역 주도'의 고용정책 추진 체계로 전환하며, 이를 위해 지역 내 미조직 노동자, 취약계층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지역 사회적 대화'를 법제화**하여 거버넌스를 실질화하고자 함. 나아가 단순한 양적 일자리 창출에 머물지 않고 **지역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명시하며, 주거·돌봄·보육·교통 등 정주 여건의 포괄적 개선**을 통해 지역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자 함

이와 함께 **지역고용 활성화를 전담하는 지원기관의 독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상시적 운영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당면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등 13인)	2026-11-16 발의

최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규제와 처벌 중심의 정책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과 유인책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현재 정부는 위험성평가 인정, 안전보건 상생협력 우수기업 선정 등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한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예방활동 수준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거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활성화하고,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안 제157조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10인)	2026-11-17 발의

현행법상 주유소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방지하기 위한 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므로 대부분의 주유소에는 기름을 공급받거나 차량에 주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포집·회수하여 지하탱크에 보관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음

그런데 포집·회수 용량을 초과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통기관의 대기밸브를 통해 인근 주거지역으로 고스란히 배출되는데 이는 인체에 중추신경 마비와 암을 발생시키는 벤젠·톨루엔 등의 유해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주유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재활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여 범세계적인 탄소제로정책에 기여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안 제44조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2인)	2026-11-18 발의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을 10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반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발전설비의 내용연수, 초기 투자비 회수 및 프로젝트 금융조달 등을 고려하여 통상 20년 이상의 장기간 운영을 전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현행 임대기간으로는 사업기간 전체에 대한 안정적인 부지사용권 확보에 한계가 있음

특히 최초 임대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사업자는 장기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중도에 임대기간을 갱신하거나 연장하여야 하고, 향후 임대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은 장기 전력구매계약, 금융조달 및 투자비 회수 등의 측면에서 사업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최초 임대기간을 20년 이내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기간을 별도로 두며, 재생에너지 설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간 안정적인 부지사용권을 확보하고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26조제3항)**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의원 등 11인)	2026-11-19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정부도 2030년까지 100GW 규모의 태양광을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별도 부지조성이 불필요하고 계통 및 주민수용성이 양호하며 기업 전기요금 절감이 용이한 산단·공장지붕을 4대 정책입지 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음

최근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및 글로벌 기업들의 RE100 이행 요구 등 탄소 감축 중심의 통상 환경 변화가 국내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조업 전반의 탄소 저감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후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기반 마련이 요구됨

이에 **공장의 신축·증축 또는 개축 등을 하는 경우 지붕에 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도입**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내 산업계의 기후 규제 대응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21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등 10인)	2026-11-19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하도록 하면서, 사업주가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정년 하한을 60세로 규정하고 있음

통계청의 '2020년~2040년 인구전망'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인 고령 인구가 2020년 815만 명에서 2025년 1,000만 명에 이르러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의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리고 통계청의 평균초혼연령 통계에 따르면, 초혼 연령이 1990년 기준(남성:27.79세, 여성:24.7세)보다 2021년 기준(남성:33.35세, 여성:31.08세)이 높아졌고, OECD의 '2022 한국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초산 연령도 1993년 기준(26.2세)에서 2020년 기준(32.3세)이 더 높아져 초혼·초산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

이와 같이 가파른 고령화의 진행과 초혼·초산의 연령 증가를 고려하면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현행법상 정년 하한을 60세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고령 인구의 소득 단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양육기간 중 소득 단절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므로 현행법상 일률적 정년 연령 적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존 정년 하한을 유지하되, 자녀가 1인인 근로자는 63세, 2인인 근로자는 65세, 3인 이상인 근로자는 67세로 정년의 하한 연령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자녀 양육기간 중 소득 단절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안 제19조)**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등 11인)	2026-11-17 발의

현행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리처분계획 수립 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

그런데 공유부동산의 대표 조합원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가 없어 지분이 미미하거나 다른 세대에 속한 공유자를 형식적으로 대표 조합원으로 선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대부분을 소유한 자가 대표 조합원에서 빠지게 되어 그가 속한 세대가 정비구역 안에 별도로 소유한 다른 부동산과 합산되지 않아 사실상 하나의 세대가 둘 이상의 입주권을 확보할 수 있음

이에 **공유자대표조합원의 자격을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의 최대 지분 소유자로 한정**함으로써 조합원 지위가 실질적 지분 보유와 일치하도록 하고 1세대 합산 원칙이 공유관계를 이용해 회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39조제1항)**

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의원 등 12인)	2026-11-17 발의

현행법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 등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지 않아도 되는 사항까지 관행적으로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내용이 과다해지고 계획의 수립 및 변경이 장기화되는 등 지역의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특별계획구역이 법률상 근거 없이 국토교통부의 지침으로 운영되면서 해당 구역에 대한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 등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계획구역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의 유연성을 높이고 그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폐지법률안(고동진의원 등 11인)	2026-11-19 발의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6년에 제정되었음. 그런데 최근 금리 및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고 재건축부담금까지 더해지면서 재건축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등 재건축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건축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을 폐지**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지원하고 도심 내 원활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4인)**	**2026-11-19 발의**

현행법은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 운수종사자에게 주기적인 자격유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일회성 검사에 그치는 현행 제도는 상당한 안전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고령 운수종사자들의 생계불안 또한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한편, 최근 인공지능 등 첨단 모빌리티 기술의 발달로 운전자의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위험 운전을 사전에 예방하는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고령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실시간 안전운행 관리 시스템의 우선적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위험운전 관리 체계의 실효성이 입증된 실시간 안전운행 관리 장비가 설치된 자동차를 전담하여 운행하는 사람에 대하여, 운전 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령 운수종사자들에게 추가 선택지를 제공하고, 과학적 기술기반 교통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13항 신설 등)**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11/24(화) 10:00	- 국무위원 후보자(법무부장관 이용철) 인사청문회
정무위	법안1소위	11/24(화) 09:1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1/24(화) 09:30	- 법안 의결
	법안2소위	11/25(수) 미정	- 법안 심사
재경위	전체회의	11/26(목) 10:00	- 국세청장 후보자(안덕수) 인사청문회
과방위	전체회의	11/24(화) 10:00	- KBS사장 후보자(이태현) 인사청문회
	정보통신 법안소위	11/27(금) 10:00	- 법안 심사
복지위	법안1소위	11/24(화) 10:00	- 법안 심사
	법안2소위	11/25(수)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11/26(목) 10:00	- 법안 의결
기후노동위	기후에너지환경 법안소위	11/24(화) 10:00	- 법안 심사
	고용노동 법안소위	11/26(목) 10:00	- 법안 심사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11/23(월) 10:00	건설현장 기술력·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세미나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방향-	나경원 의원실	국회도서관 대강당
	11/23(월) 10:00	중고차 성능보험 의무화 폐지 가능한가?	모경종 의원실	의원회관 1간담회의실
	11/23(월) 14:00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	주호영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23(월) 14:00	한국형 에스컬레이터 산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신성범 의원실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11/24(화) 10:00	2026 해상풍력 얼라이언스 국회 토론회	서왕진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24(화) 10:00	요금은 정부가 깎고, 구멍은 발전사업자가? 거꾸로 가는 LMP	나경원 의원실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11/24(화) 14:00	디지털자산 나눔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	민병덕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24(화) 14:00	트래블룰과 AML	박정현·민병덕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대강당
	11/25(수) 09:30	(농축산업 고도화를 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 전략과 정책 과제	이개호·박형수 의원실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11/25(수) 10:00	글로벌 경제 대전환기, 철강산업 생태계 강건화 방안	권향엽·어기구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25(수) 10:0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확산을 위한 국회 토론회	김성원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11/26(목) 15:15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경제 번영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김윤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11/27(금) 10:30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특별위원회 출범식	김윤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11/27(금) 13:30	제1회 국방운영혁신 세미나	유용원·황명선 의원실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11/23(월)	「금주의 보고서」 제2026-43호(통권 제75호)	국회도서관	
	11/25(수)	「금주의 서평」 제2026-45호(통권 제804호)		
	11/25(수)	「Data&Law」 제2026-15호(통권 제53호)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5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11/16(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026-14호(통권 제38호)	국회도서관	
	11/17(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026-23호(통권 제311호)		
	11/18(수)	「금주의 서평」 제2026-44호(통권 제803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11/16(월)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6. 10. 28. - 2026. 11. 10.)
11/17(화)	공정거래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개정안에서 이행감독기구 운영기준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1/18(수)	국방획득/ 방위산업	검찰청 폐지에도 불구하고 군형사절차는 종전의 수사·재판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므로, 군인·군무원 및 방산기업 임직원은 「군사법원법」과 「형사소송법」의 차이를 정확히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1/20(금)	방송통신 (TMT)	AI 산출물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규제 강화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전부개정안 발의
11/20(금)	금융	디지털금융 ISSUES (2026. 10. 30. – 2026. 11. 12.)
11/20(금)	에너지·인프라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시행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남형기 | 고문

프로필보기



윤형중 | 고문

프로필보기



김건훈 | 수석전문위원

프로필보기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영준 | 변호사

프로필보기



이승상 | 변호사

프로필보기



이승직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